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4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고동진

김상훈 • 조지연 • 임이자

유용원 · 김용태 · 주호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해·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사관학교 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장기복무장교로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2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23년 기준 120명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법률 제 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양성비용 상환) ① 사관학교에 입학한 자(수탁생도는 제외한다)가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성비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성비용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양성비용 상환) ① 사관학
	교에 입학한 자(수탁생도는 제
	외한다)가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
	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재
	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양성비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 상환의무자가 양성비용을 상환</u>
	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
	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양성비용을 산정하여야

<u>한다.</u>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성비용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 시하여야 한다.